

화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7. 5. 28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97. 5. 28
- 다. 상정일자 : 97. 6. 24(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자 : 내무과장 이수철
- 나. 폐지사유
 - 행정 여건상 현실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함.
- 다. 주요내용
 - 화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민병항)

- 본 조례 폐지안은 현실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 부 : 화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97-63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1997. 5. 28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민선자치제의 정착과 주민들의 여론이 의회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하여 읍면행정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동 조례가 행정 여건상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.

화순군 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 명예읍면장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